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6. 4. 27. (수)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윤 홍 창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6년 4월 18일

○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3. 제정 이유

충북지역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지방보조금 지원(안 제4조)

라. 준용 규정 명시(안 제5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고, 올바른 국가관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이와 관련된 각종 교육행사를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안 제3조에 충북지역 독립유공자 선양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행사지원에 필요한 지원 계획 수립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과 기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 보조금 지원과 지출 근거가 명확히 이루어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38호, 2015.12.29.,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12.4.] [대통령령 제26691호, 2015.12.4., 일부개정]

제29조 (기부·보조의 제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6.] [법률 제13718호, 2016.1.6.]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 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5.5.15.] [충청북도조례 제3790호, 2015.5.15., 전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